

#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설훈 · 소병훈 · 위성곤  
박홍근 · 유은혜 · 안민석  
권칠승 · 조승래 · 신동근  
이원욱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·제6항 및 제8항 신설).

##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·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구 시·도지사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6조(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구 시·도지사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 <u>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